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059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허종식 · 이연희  
임미애 · 박 정 · 김남희  
윤후덕 · 이수진 · 박해철  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,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,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 하며,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69조의2, 제382조의3, 제402 조 및 제517조의2).

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9조의2(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)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·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8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02조 중 “會社에”를 “회사·주주 또는 근로자에게”로, “株主는 會社를”을 “주주,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회사·주주 또는 근로자를”로 한다.

제5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7조의2(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(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고자 하는 경

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(이하 “인수자모색절차”라 한다)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가 법령

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5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 또는 제517조제2호에 따른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제369조의2(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)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·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<br/>① · ② (생략)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<br/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/><u>③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第402條(留止請求權)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<u>會社</u>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1이상 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<u>株主</u>는 <u>會社</u>를 爲하여 理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.</p> | <p>第402條(留止請求權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회사·주주 또는 근로자에게</u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주주,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회사·주주</u></p> |

<신 설>

또는 근로자를-----

-----

-----.

제517조의2(고용영향이 큰 회사

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

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

제1항 각 호의 행위(회사 영업

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

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

행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

서 같다)를 하고자 하는 경우

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
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

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절차(이하 “인

수자모색절차”라 한다)를 6개

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

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

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

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

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

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

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  
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  
용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  
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 
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  
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  
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  
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 
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
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  
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  
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  
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 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
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 
신청을 할 수 있다.